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증가로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조직의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장부족인력, 관서 신설 필요인력, 산불 대응 전문인력 등 총 913명의 소방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관련 시행규칙에 반영·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1. 15. ~ 0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본문 중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08명)”을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17명)”으로 한다.

기관 별 직급 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6,773	7,552	3,781	3,043	3,428	1,627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4,541	5,558	5,576	1,241
소방 준감 이하	66,773	7,552	3,781	3,043	3,428	1,627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4,541	5,558	5,576	1,24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1]

시 · 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현 행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65,860	7,490	3,748	2,980	3,397	1,618	1,627	1,399	585	11,271	4,463	2,845	4,266	3,456	4,516	5,489	5,481	1,229
소방 준감 이하	65,860	7,490	3,748	2,980	3,397	1,618	1,627	1,399	585	11,271	4,463	2,845	4,266	3,456	4,516	5,489	5,481	1,229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08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개 정 안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66,773	7,552	3,781	3,043	3,428	1,627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4,541	5,558	5,576	1,241
소방 준감 이하	66,773	7,552	3,781	3,043	3,428	1,627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4,541	5,558	5,576	1,241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17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시 · 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860</u>		<u>66,773</u>	+913
		서울	<u>7,490</u>		<u>7,552</u>	+62
		부산	<u>3,748</u>		<u>3,781</u>	+33
		대구	<u>2,980</u>		<u>3,043</u>	+63
		인천	<u>3,397</u>		<u>3,428</u>	+31
		광주	<u>1,618</u>		<u>1,627</u>	+9
		대전	<u>1,627</u>		<u>1,642</u>	+15
		울산	<u>1,399</u>		<u>1,429</u>	+30
		세종	<u>585</u>		<u>609</u>	+24
		경기	<u>11,271</u>		<u>11,559</u>	+288
		강원	<u>4,463</u>		<u>4,466</u>	+3
		충북	<u>2,845</u>		<u>2,898</u>	+53
		충남	<u>4,266</u>		<u>4,289</u>	+23
		전북	<u>3,456</u>		<u>3,534</u>	+78
		전남	<u>4,516</u>		<u>4,541</u>	+25
		경북	<u>5,489</u>		<u>5,558</u>	+69
		경남	<u>5,481</u>		<u>5,576</u>	+95
		제주	<u>1,229</u>		<u>1,241</u>	+12